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310 배당이의

원 고 A

피 고 1. 대한민국

2. [redacted]시

[redacted]

[redacted]

3.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18. 7. 19.

판 결 선 고 2018. 10.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수원지방법원 [redacted]지원 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하고, 위 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27

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기일을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2.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피고 대한민국(소관: [redacte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1,714,240원을 0원으로, 피고 [redacted]시에 대한 배당액 54,640,761원을 18,660,46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7,694,539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위 배당표 중 피고 [redacted]시에 대한 배당액 54,640,761원을 54,524,494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배당액 39,860,652원을 24,066,04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910,87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권자가 아닌 피고들이 배당받은 배당액이 정당한 집행권원을 가진 원고에게 배당되도록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redacted]시, 주식회사 B은,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본안전 항변을 하지 않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나.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27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절차가 적법하게 행하여졌느냐의 여부는 경매조서의 기재만이 유일한 증명자료가 된다(대법원 1994. 8. 22. 선고 94마1121 결정 등 참조).

다.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것은 채무자 D이 유일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라. 원고는, D이 원고의 친누나로서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배당기일에 이의 진술을 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이의 진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기일조서(을다 제1호증)에는 D이 '채무자'로서 이의를 제기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대리인'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기재가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87, 88조에 의하면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배당절차의 경우 당사자와 위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라야 비로소 대리인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D이 그러한 허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D이 이 사건 배당기일에 원고를 대리하여 이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27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환우

판사 최형준

판사 한옥형